

2021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공고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자원순환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초지자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 공모개요

- (주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주관) 한국폐기물협회
- (후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간) 2021. 6. 14. (월) ~ 8. 13.(금)
- (신청방법)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 kkingmon@naver.com

※ 문의처 : 한국폐기물협회 분리배출팀 박하연 팀장, 이현지 사원(02-2680-7042, 7045)

- (제출서류) 공모 참가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모범시설 공적서(별지 제4호 서식), 기타 참고자료 등
- (신청자격)

- 종이팩 · 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 스티로폼, 용기류, 비닐류 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초지자체***

* 공동주택단지 : 500세대 이상(아파트입주자협의회)

** 단독주택단지 : 200세대 이상(주민센터)

*** 기초지자체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특별시, 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제외)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 공모전에서 “분리배출 모범시설”로 선정된 단체는 제외

○ (구비서류 작성 방법)

- 해당 대상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업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작성하되, 관리사무소·지자체, 읍·면 동사무소 등에서도 작성지원 가능
- 분리수거 업무위탁 등으로 해당 시설의 대표자에 의한 작성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 업무 대행사에 의한 작성 가능
- 기초지자체의 경우 권역 내 주택단지 각 1개소(공동주택, 단독주택)를 추천해야하며, 기초지자체가 추천한 주택단지의 평가결과를 기초지자체 평가에 반영

※ 공동주택, 단독주택 부문 평가 시 기초지자체 추천 유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평가

□ 포상내역 및 부상

포상내역	개소	부상(상금)	비고
계	12	총 27백만원	
최우수상 (환경부 장관상)	3	각 5백만원	부문별 각 1개소
우수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3	각 2백만원	
장려상 (공제조합 이사장상)	6	각 1백만원	부문별 각 2개소

※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단에서 시상내역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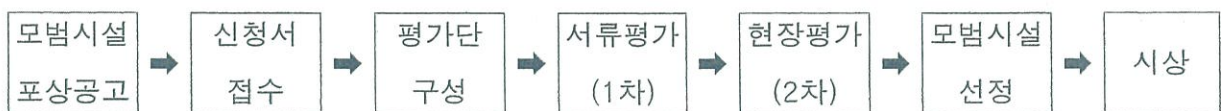
- 재활용 가능자원 발생원 → 배출/보관 → 시설 외 반출 → 재활용·처분 등 자원순환 전 과정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
 - * 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
- 분리배출·재활용 처리 등 전체적 자원순환체계 구축 현황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현황
-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들의 참여에 관한 사항(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활성화 관련 활동 제외)
- 분리배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신청단체의 우수 사례 등
- (평가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6~9명) 등으로 구성
- (평가점수)

구분	내용
기초지자체	- 공적서(별지 제4호 서식) 기재사항 평가(40%) - 서면평가결과 우수단체 현장평가(40%) - 추천 주택단지 평가결과 반영(20%)
단독 및 공동주택	- 공적서(별지 제4호 서식) 기재사항 평가(40%) - 서면평가결과 우수단체 현장평가(60%)

- (모범시설 선정)
 - 1차 서면평가 결과 및 2차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체 순으로 모범시설 선정
 - 모범시설로 선정된 단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추진절차



□ 유의사항

- 신청서 등의 서식은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http://www.kwaste.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되, 정해진 서식 준수(제반 서류는 휴먼명조 12포인트 크기 작성 원칙)
- 제출된 서류, 자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덧붙임 1. 모범시설 공모 참가신청서(부문별 별지 제1호~제3호) 1부.
2. 모범시설 공적서 양식(별지 제4호) 1부.
3. 부문별 모범시설 추천서 양식(별지 제5호~제6호)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공동주택) 공모 참가신청서					
신청인	주택단지 명칭		성명 (대표자)		
	대표자 주소				
	대표자 지위		※ 단지 주민대표, 부녀회회장, 대행사 대표 등 주택단지에서의 대표자 지위를 기재		
	전화번호		(H · P) (일반)		
주택 단지 현황 및 분리 배출 시행	구 분		공동주택현황		
	주택 단지 현황	세대수(가구)			
		인구수(인)			
		면적(천㎡)			
		최초입주시기		년 월	
구비서류(별도 첨부)		1. 공적서 2. 기타 참고자료			
귀 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공동주택) 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사)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단독주택) 공모 참가신청서				
신청인	단독주택 명칭		성명 (대표자)	
	대표자 주소			
	대표자 지위			
	전화번호		(H · P)	(일반)
주택 단지 현황 및 분리 배출 시행	구 분		단독주택현황	
	주택 단지 현황	세대수(가구)		
		인구수(인)		
		면적(천㎡)		
구비서류(별도 첨부)			1. 공적서 2. 기타 참고자료	
귀 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단독주택) 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사)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기초지자체) 공모 참가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성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성명	E-Mail	
		연락처	(휴대)	(일반)
신청기관 현황 및 분리 배출 시행	유 형		☐ 시 ☐ 군 ☐ 구	
	지자체 현황	세대수(가구)		
		인구수(인)		
	추천 단체	공동주택		
		단독주택		
구비서류(별도 첨부)		1. 공적서 2.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추천서 (별지 제5호~제6호 서식) 3. 기타 참고자료		
귀 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기초지자체) 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사)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적서

(신청단체명 : ○○○○, 00시·도 00시·군·구)

1. 분리배출·재활용 처리 등 전체적 자원순환체계 구축 현황

※ (필수 기재사항) 분리배출 품목 수, 분리수거용기 설치 개수, 2019~2020년도 1인당 재 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량(증감률 포함), 분리배출 이행상황 자체점검 노력, 분리배출 담당 조직운영 및 역할분담 등 작성

2.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현황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활성화 노력, 주민 홍보 사례 등

3.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들의 참여에 관한 사항

※ 홍보물 배포, 안내방송, 교육, 현수막 게재 등 홍보실적을 계량화하여 작성
단독주택의 경우, 지자체(읍·면·동)와 시민단체 또는 주민협의체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 추가 작성(투명페트병 관련 활동 제외)

4. 분리배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우리 주택단지(기초지자체)의 우수 사례

※ 타 주택단지 또는 기초지자체에 확산·전파할 수 있는 사례(추진배경, 추진현황, 성과 등)를 1페이지 이상 작성

< 작성요령 >

- 위 항목별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분량은 1개 항목당 1쪽 내외로 작성
- 재활용 가능자원 포장재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의 분리배출 대상 폐기물도 포함하여 작성
- 계량화 가능한 자료는 계량화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음
- 허위·과장 등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추천서(공동주택)				
기관 개요	주택단지 명칭		성명 (대표자)	
	주소			
추천 의견				
위 시설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인 소속 : 직위 : 성명 : (사)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추천서(단독주택)				
기관 개요	주택단지 명칭		성명 (대표자)	
	주소			
추천 의견				
위 시설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인 소속 : 직위 : 성명 : (사)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귀하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기초지자체 평가 기준(안)

심사항목 (배점)	세부확인사항	배점	
		기준	점수
계			100
서면평가 (40점)	1. 전년대비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량 증감률	20% 이상..... 10점 0% 이상 ~ 20% 미만 7점 0% 미만 4점	10
	※ 증감률 = ('20년도-'19년도 1인당 배출량) ÷ '19년도 1인당 배출량)		
	2. 주민 교육 및 홍보 횟수	10회 이상: 5점 7회 이상 10회 미만:..... 3점 7회 미만: 2점	5
	※ 교육: 지역 주민, 학생 등 대상 교육, 이벤트 등 추진 실적 ※ 홍보: 리플렛, 현수막 등 제작		
	3. 교육 및 홍보의 적정성	매우우수: 5점 우수: 3점 보통: 2점	5
	※ 교육 및 홍보 사업 내용의 적정성 평가		
	4. 재활용 가능자원 현장여건 개선	매우우수: 10점 우수: 7점 보통: 4점	10
	※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마대 지원(투명페트병 등), 분리수거장 환경 개선 등 지원 내용		
	5. 재활용가능자원 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 사례	매우우수: 10점 우수: 7점 보통: 4점	10
	※ 타 기관 적용시, 경제적·사회적 효과 평가 ※ 모범사례로 적극 전파(활용) 가능한 경우 등		

심사항목 (배점)	세부확인사항	배점	
		기준	점수
현장평가 (40점)	- 분리배출 체계 구축 실태, 운영 노력도, 현장 이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0
단독 및 공동주택 평가반영 (20점)	1. 공동주택 분리배출 현황 평가 결과 반영 * 공모전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별도 평가	매우우수: 10점 우수: 7점 보통: 4점	10
	2. 단독주택 분리배출 현황 평가 결과 반영 * 공모전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별도 평가	매우우수: 10점 우수: 7점 보통: 4점	10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단독 및 공동주택 평가 기준(안)

심사항목 (배점)	세부확인사항	배점	
		기준	점수
계			100
서면평가 (40점)	1. 분리배출 체계 구축 실태 1-1. 분리수거 품목수 * EPR 포장재 및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품목수	10종 이상: 6점 8~9종: 5점 6~7종: 3점 4~5종: 2점 3종 이하: 1점	6
	※ EPR(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투명페트병 및 합성수지류) 및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종이류, 고철류, 의류, 소형가전제품, 폐식용유 등) 분리수거 품목 수 ※ 통합수거의 경우, 별도 인력을 투입하여 선별한 품목 수		
	1-2. 분리배출 이행상황 자체점검 노력 * 당초 계획대로 집행 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방안 강구 여부 등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2점	5
	※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방안 강구 여부 등		
	1-3. 담당조직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조직구성 및 역할 분담 여부 * 분리배출 실태 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분리배출 활성화 계도 등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2점	5
※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여부 ※ 분리배출 실태 점검 주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분리배출 활성화 계도 등			

심사항목 (배점)	세부확인사항	배점	
		기준	점수
서면평가 (40점)	2.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현황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현황 정성평가	우수: 7점 보통: 5점 미흡: 3점	7
	※ 투명페트병 전용 마대 운영, 주민 홍보 등 전반적인 현황 평가 ※ 투명페트병 외 타재질 혼합 확인 등		
	3. 품목별 분리배출량 증감률	20% 이상..... 7점 0% 이상 ~ 20% 미만 5점 0% 미만 3점	5
	※ 증감률 = ('20년도-'19년도 1인당 배출량) ÷ '19년도 1인당 배출량) - 전년도 배출량이 없거나 비교가 불가할 경우 5점 부여 - 측정비교가 어려울 경우(예: 중량측정없이 일괄 입찰) 5점 부여 - 처리방식이 상이하여 비교·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위원 간 협의		
	4. 홍보·교육 및 구성원 참여 정도 * 홍보 교육의 충실도·노력도 정성평가 * 홍보교육 방법 정성평가	우수: 7점 보통: 5점 미흡: 3점	7
	※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맞는 충실도 ※ 모범사례로 적극 전파(활용) 가능한 경우 등 - 지자체와 시민단체(주민협의체)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 등		
현장평가 (60점)	5. 우수사례 * 분리배출 우수사례 정성평가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	5
	※ 타 사례와 비교시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단체, 기관 적용시, 경제적·사회적 효과 평가		
현장평가 (60점)	- 분리배출 체계 구축 실태, 운영 노력도, 현장 이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0